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5.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3년 4월 18일
- 나. 발 의 자 : 윤동규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25일
-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4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동규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의 책무를 마련함.(안 제4조)
-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3)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3년 3월 현재 우리구도 11%로 나타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 질병, 가족들로부터 소외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일 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증가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해마다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노인의 4.3% 만이 참여하고 있어 일 자리를 원하는 대다수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보장 실태에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의 수급자 비율은 77.8%로 우리나라 노인의 약 22.2%는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지속 가능한 노인 적합 일자리 보급,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의 제정이 노인의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확대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운동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
----------	-----

발의연월일 : 2013년 4월 일

발 의 자 : 운동규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의 책무를 마련함.(안 제4조)
- 나.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제 정 안 : “별 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13년 예산배정

다. 합 의 : 노인복지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2013. 4. 8 ~ 4, 15)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